

복 흥 초 등 학 교 학 칙

개정 2006. 4. 7.
개정 2007. 4. 1.
개정 2008. 2. 25.
개정 2009. 2. 19.
개정 2010. 2. 11.
개정 2011. 4. 12.
개정 2012. 4. 05.
전면개정 2014. 4. 08.
개정 2015. 4. 15.
개정 2019. 4.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의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의 명칭은 ‘복흥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의 위치는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정산로 12 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5조(학년·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고,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및 국가가 정하는 임시공휴일
2. 여름휴가, 겨울휴가, 학년말휴가, 단기방학
3.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일 휴업일
4.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재량휴업일

② 제1항의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이를 조절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제·학생정원) 학년별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매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교과·수업일수 및 평가

제8조(교과·수업일수)

- ① 각 학년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를 편성 운영한다.
- ②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학교교육계획에 따른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제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9조(평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학교 교육계획에 학생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유예·수료 및 졸업

제10조(입학)

- ①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의해 복흥면장으로부터 취학통지서가 발부된 자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와 동시행령 제19조에 의해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한 자로 한다.
- ② 입학 시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1항에 의해 지정된 날짜로 하되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이를 조절할 수 있으나 학년초부터 30일이내로 한다.
- ③ 1항에 해당되는 학생이 입학기일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아니할 때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해 입학을 허가한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그 성명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2008.05.27공포)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 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입학)

- ① 학생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다.
- ② 제10조 및 제11조 1항에 의해 전입학절차를 마친 학생이 전학기일 후 7일이내에 전입학하지 않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학생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취학·편입학)

-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1항과 제29조 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재취학 및 편입학하고자 할 때는 제18조 2항의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학교장이 학년을 정하여 입학시킬 수 있다.
- ② 재취학을 원하는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이 불가능하다. 다만 학생과 학부모가 재취학을 요구할 경우 당해 학년도에는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확인 시킨 후 학교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권보호차원에서 허가할 수 있다.
- ③ 동시행령 제19조 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 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정원외 관리)

- ①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학교장이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읍·면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학교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종, 행방불명, 무단가출 등으로 인한 장기 결석자
 2. 소년원법에 의하여 소년원·감화원·소년보호단체·사원·교회·요양소 등에 보호처분을 받아 수감이 불가능한 경우
 3.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등
 4. 기타 학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취학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⑥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과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수료·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8조 제2항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5조(학생 출·결석 관리) 학생의 출결상황을 파악하여 근면성, 안전지도, 건강지도 등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학생 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결석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자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를 말한다.
- ② 지각 : 등교시간 이후 등교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조퇴 : 당일의 교육과정시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교하는 것을 말하며 사전에 학부모의 전화나 편지 등의 증빙이 있을 경우 허락한다.
- ④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담임에게 **연락하고** 결석계를 제출한다.
- 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결석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 제280호) 제8조 (출결상황) 별표 8(출결상황 관리)에 의거하여, '질병결석'으로 처리하며, 출결처리 방법은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⑥ 독촉, 경고 및 통보

1. 의무교육대상 학생이 7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을 하거나 고용자에 의해 의무교육을 방해 당할 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독촉 또는 경고를 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지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석의 경우는 출석부에 그 사유를 명기하고 결석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 법정 전염병과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학교 보건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2조)으로 인한 결석
2. 경조사로 인한 결석(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1항의 별표2의 기준)
3.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4.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훈련 참가, 교환학습, 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6.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근거한 경조사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제16조(체험학습)

①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5항과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때 현장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체험학습 -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2. 학교이외 기관 또는 단체의 주관 체험학습 - 학생의 희망과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허가한 역사탐방, 국토순례, 환경관련활동, 외국어체험활동, 외국문화와 전통문화 체험활동 등

③ 체험학습의 출석인정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교환학습 - 1개월(4주) 이내로 운영하되, 연장 가능
2. 단체 교환학습 - 2주일 이내
3. 교외 체험학습 - 연 1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
4. 기타 체험학습 - 단체 해외 체험학습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체험학습만 가능하며, 학교장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체험학습기간 모두 인정한다.

④ 체험학습의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교환학습은 학교장이 위탁교육 실시 기관장과 상호 협의하여 공문을 통해 위탁 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신청한 보호자에게 허가여부를 통보한 뒤 실시한다.
2. 단체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한다.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4.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한다.
5.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교외 체험학습의 신청절차는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제17조(조기진급·조기졸업)

- ①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제4조, 제5조, 제8조,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조기졸업제를 할 수 있다.
- ②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제3항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 전라북도교육청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에 관한 규정(2013.2.6.)에 의하여 조기진급·조기졸업 이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은 별도의 운영계획에 의한다.

제18조(학교교육과정위원회)

- ①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운영한다.
- ②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전 직원과 학부모를 필요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한다.
- ③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수업료 · 입학금 · 기타의 비용 징수

제19조(수업료·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

- ① 초·중등교육법 제2장 의무교육에 의거 수업료와 입학금은 받을 수 없으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장 학생포상 · 학생징계, 학생생활 규정

제20조(포상)

- ① 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에 의해 표창할 수 있다.
② 학생 시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1조(징계)

-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1항에 의거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생을 징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징계의 경우에는 해당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2. 특별교육이수
 3.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4. 기타 「학교생활규정」에 의한 징계
- ② 학교장은 제1항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훈육 ·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세부내용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22조(학교생활규정)

- ① 학생들의 학교 내 교육 ·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을 따로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1항의 규정을 수립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3조 (전교 다모임회 조직)

- ①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한 학생전원으로 구성된 전교 다모임회를 구성 운영한다.
- ② 전교 다모임회는 회장·부회장 및 다모임 활동으로 둔다.
- ③ 전교 다모임회 임원선출과 임기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하고 정한다.

제24조(전교 다모임회 운영)

- ① 정기회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갖는다.
- ② 각 다모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도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한다.
- ③ 전교다모임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활동 내용은 교내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한다.

제10장 보칙

제25조(학칙개정절차)

- ①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4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전라북도교육청 학칙개정업무 처리요령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기타 법령의 적용) 이 학칙에서 제외된 사항은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세부규정)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규정으로 정한다.